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직무청렴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청렴의무 이행 및 그 불이행시 제재조치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의무의 준수) 원장은 관계 법령,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직원행동강령,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원 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 등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위반시 제재조치) 원장이 청렴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일정이상 형의 판결시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1.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 직책수당, 성과상여금(연봉 포함분 제외) 등 전액 환수 및 퇴직금 50% 감액 등 형 확정이후 형 집행 기간 임원경력 확인발급 정지, 포상 취소, 손해배상청구, 관련 경제적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유보·지급취소 또는 환수, 기타 이사회가 의결하는 제재 등
2. 금고 이상의 형 판결시 : 직책수당, 성과상여금(연봉 포함분 제외) 및 퇴직금 등 형 확정 전까지 지급유보 등 형 확정 전 복리후생이용권 사용 정지, 포상수여 동 기간 정지, 파견 동 기간 정지, 관련 경제적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유보·지급취소 또는 환수, 기타 이사회가 의결하는 제재 등
3. 자격상실, 자격정지 및 벌금형 확정시 : 직책수당, 성과상여금(연봉 포함분 제외) 50% 환수 및 퇴직금 50% 감액 등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벌금형의 경우 3년간) 기간 복리후생이용권 사용정지, 포상수여 동 기간 정지, 파견 동 기간 정지, 관련 경제적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유보·지급취소 또는 환수, 기타 이사회가 의결하는 제재 등

제4조(청렴의무 준수기간) 청렴의무는 원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준수하여야 하며, 퇴직 후에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 계약, 규정 등에 따라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제5조(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심의절차) 원장의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 및 제재조치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위반여부, 제재수준 등을 심의 의결한다.

제6조(의견진술권의 보장) 원장 및 관계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제7조(세부 계약 이행) 기타 청렴계약제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은 임원 직무 청렴계약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2015. 4. 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선임비상임이사 유해영 (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 장 윤종록 (인)